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

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광산구

내 용

광주광역시에서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,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 확보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(이하 “쌀직불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하고, 쌀직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¹⁾과 변동직접지불금²⁾으로 구분하고 있다.

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. 1. 1.부터 2000. 12. 31.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(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함)로 하며, 다만 「농지법」 제34조,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, 농업 외의

1) 고정직접지불금

-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대하여 지급
- 지급대상 농지에서 '01년 이후 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

2) 변동직접지불금

-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,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

종합소득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, 농지면적이 1,000㎡ 미만인 자,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,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지자체에서 쌀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를 전용 하거나 자기의 소유가 아닌 국·공유지를 임대차 계약 없이 무단점유한 자(이하 “국·공유지 임대차 미계약 자”라 한다), 농지면적이 1,000㎡ 미만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그런데 광주광역시 동구 등 5개 구에서는 2014년~2016년 쌀직불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[표]와 같이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총 167농가에게 24,470,290원의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.

[표]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지급 현황(2014년~2016년)

구 분	쌀직불금 지급농지 (㎡)			쌀직불금 지급내역 (㎡, 원)					재검토결과 회수해야 할 직불금 (㎡, 원)				
	건수	농지면적	전용면적	지급면적		지급액			회수대상 면적		회수금액		
	고정	변동	계	고정	변동	계	고정	변동	고정	변동	계	고정	변동
합 계 (A+B+C)	167	122,088	5,829	121,909	103,181	24,920,090	9,608,340	15,311,750	116,260	103,181	24,470,290	9,158,540	15,311,750
농지전용 (A)	7	13,314	5,829	13,248	3,435	1,385,480	1,042,120	343,360	8,381	3,435	992,560	649,200	343,360
국·공유지 (B)	159	108,668	-	108,555	99,640	23,524,080	8,558,510	14,965,570	107,773	99,640	23,467,200	8,501,630	14,965,570
1,000㎡미만 (C)	1	106	-	106	106	10,530	7,710	2,820	106	106	10,530	7,710	2,820

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, 서구청장, 남구청장, 북구청장, 광산구청장은

[시정] 농지전용, 국·공유지 임대차 미계약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 지급된 쌀소득보전직불금 24,470,290원을 회수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